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10호 2012. 9. 17.(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0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7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73호(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17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74호(지적기준점 성과고시) 22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75호(도로명주소 고시) 23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76호(도로명주소 고시) 24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69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번호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7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9

【재정공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정공시 제1호(2012년 연수구 지방재정공시) 38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연수구-미추홀콜센터 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서비스 시행으로 D/B갱신 등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총정원 변동 없이 정보통신과에서 기능직 정원을 감원하여 민원지적과로 이체 - 정보통신과 : 1명 감원(전화상담 8급 △1) - 민원지적과 : 1명 증원(조무 8급 1)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9.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0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합계	619	430	17	42	12	118
정무직	1	1				
일반직	574	391	15	38	12	118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4	23	3	5	1	12
행정	24	12	3			9
의무	3			3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	2				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간호	1			1		
6급	132	97	4	11	3	17
행정	67	49	4		1	13
세무	4	4				
사회복지	2	2				
전산	1	1				
공업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녹지	2	2				
보건	5	4		1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3	2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행정·환경·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183	127	5	13	5	33
행정	82	47	5		3	27
세무	19	19				
사회복지	16	10				6
전산	6	5			1	
사서	1				1	
공업	7	7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녹지	3	3				
보건	7	4		3		
의료기술	3			3		
간호	6			6		
환경	5	5				
시설	20	20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62	113	3	8	3	35
행정	79	48	3	1		27
세무	8	8				
사회복지	7	3				4
전산	5	5				
사서	1				1	
공업	8	7			1	
녹지	2	2				
보건	6	3		3		
의료기술	3			3		
간호	1			1		
환경	3	3				
시설	19	19				
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1	1				
9급	48	27				21
행정	18	4				14
사회복지	10	7				3
전산	1	1				
공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	1				
기능직	44	38	2	4		
6급	4	4				
운전	1	1				
기계	1	1				
조무·사무	2	2				
7급	17	16	1			
운전	6	5	1			
전기	1	1				
기계	2	2				
조무·사무	6	6				
사무	2	2				
8급	16	15	1			
운전	6	6				
전화상담						
방호	1	1				
기계	1	1				
사무	7	6	1			
조무	1	1				
9급	7	3		4		
운전	6	2		4		
조무	1	1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연수구-미추홀콜센터 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D/B구축 완료로 인한 서비스 시행으로 D/B갱신 등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정보통신과 : 미추홀 콜센터 구축 완료 후 교환실 폐지에 따른 직원 재배치 ⇒ 1명 감원(전화상담 △1) ○ 민원지적과 : 시 미추홀콜센터 연계시스템 업무 DATA 취합 및 자료수정 등 인력 필요 ⇒ 1명 증원(조무 1)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9. 17.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30	
전략사업추진단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시설1
		7급	3	행정1, 시설2,
		8급	-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8급		
기획감사실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8	행정7, 행정·사회복지1
		7급	8	행정7, 시설1,
		8급	3	행정2, 전산1
		9급	-	
총무과	계		27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1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7	행정7
		8급	5	행정4, 공업1
	기능직	소계	5	
		7급	2	조무·사무1, 운전1
		8급	2	사무1, 운전1
		9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 육 지 원 과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3	행정3(전문계약직1 포함)
		9급		
	기능직	소계	-	
		7급		
		8급		
		9급		
문 화 체 육 과	계		13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4
		8급	2	행정2
		9급		
	기능직	소계	2	
		7급	2	조무·사무1, 운전1
재 무 회 계 과	계		20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시설·공업1
		7급	9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4
		8급	2	행정1, 공업1
		9급	-	
	기능직	소계	4	
		6급	1	운전1
		7급	2	조무·사무1, 운전1
		8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정보통신과	계		19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방송통신1
		6급	4	행정1, 전산1, 행정·방송통신2
		7급	7	행정1, 전산4, 방송통신2
		8급	4	행정1, 전산1, 방송통신2
		9급	1	전산1
	기능직	소계	2	
		7급	1	사무1
		8급	1	사무1
		9급		
세무과	계		41	
	일반직	소계	41	
		5급	1	행정1
		6급	7	세무4, 행정·세무3
		7급	17	세무17
		8급	14	행정3, 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9급	2	행정·세무2
	기능직	소계	0	
		8급		
		9급	-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급	9	행정5(전임계약직1명포함), 시설4
		8급	13	행정7, 시설5, 전산1
		9급	1	행정·시설1
	기능직	소계	2	
		7급		
		8급	2	운전1, 조무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주민생활지원과	계		29	
	일반직	소계	27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7급	9	행정4, 사회복지5
		8급	8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2	사무1, 운전1
사회복지과	계		15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사회복지1, 행정2
		9급	4	사회복지4
	기능직	소계	1	
		6급	1	조무·사무1
가정복지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지역경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8급	4	행정2, 공업2
		9급		
일자리창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사회복지1
청소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5	행정2, 환경2, 행정·환경1
		8급	2	행정1, 환경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6급	1	조무·사무1
		7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환경보전과	계		17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환경1
		6급	4	환경1, 행정·환경2, 행정·공업·환경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6	행정1, 환경2, 행정·환경3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위생관리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4,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방재과	계		31	
	일반직	소계	24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6급	6	행정2, 시설3, 시설·공업1
		7급	7	행정1, 시설4, 공업2
		8급	8	행정1, 전산1, 시설4, 공업2
		9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7	
		6급	1	기계1
		7급	2	기계1, 전기1
		8급	3	방호1, 운전1, 기계1
		9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건축과	계		18	
	일반직	소계	15	
		5급	1	시설1
		6급	4	행정·시설1, 시설3
		7급	3	시설3
		8급	5	시설5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3	
		7급	2	기계1, 조무·사무1
		8급	1	사무1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8급	4	행정1, 시설3
		9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공원녹지과	계		16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7급	4	녹지3, 공업1
		8급	6	행정2, 녹지2, 시설·녹지1, 공업1
		9급	1	녹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통행정과	계		13	
	일반직	소계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공업1
		7급	2	행정2
		8급	5	행정3, 시설2
		9급	2	행정1, 공업1
차량민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1, 세무2, 행정·세무1
		8급	6	행정6
		9급		
	기능직	소계	5	
		7급	2	조무·사무2
		8급	2	운전1, 사무1
		9급	1	조무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2-73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정비시범구역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정비시범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동춘동 925번지 한양1차아파트 상가
2. 구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별표1】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직접 도로에 접할 경우 표시하는 가로간판
2.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3. 병·의원에 표시하는 광고물

- ② 간판에는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실물사진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광고물의 바탕색을 원색으로 표시할 경우, 그 표시 비율이 전체바탕색의 50%이하가 되도록 표시하여야한다, 단, 기업의 C,I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간판외곽에 LED(발광다이오드)가 직접 노출되는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⑤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1. 건물 정면 1층에는 가로형 간판을 파사드를 이용한 입체형의 모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층이상 4층까지는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간판에 표시되는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범위 내에서 1층을 50cm 이내로 하고 1층 증가시마다 5cm씩 증가하여 최대 120cm 크기 이내로 한다.
- 3.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을 4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 4.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면의 업소명은 달리할 수 있다.

②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 1.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층(층수구분 모호할 경우 3m)이상

이격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

3.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4.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cm이내, 두께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업소수를 고려하여 세로 크기를 최적화 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6m 이하로 1개건물에 1개만 표시하되 종합싸인보드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업소만 표시하는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2. 4개업소 이상을 표시하는 연립형지주이용광고물은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④ 기타 정비시범구역지정에 따른 표시제한·완화 외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규칙,조례 등에 의거 표시한다.

제5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

지역내 많은 외국인의 유입에 따라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만료되고 이 고시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은 표시기간을 1회에 한하여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정비구역 지정현황

□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

○ 사업대상지

- 인천. 연수. 동춘동 925(한양1차아파트 상가)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2 - 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기준점의 번 호	세계측지계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X	Y	X	Y	X	Y	
174					-1080.90	-18686.00	재설치
1166			433262.91	171227.22			신설
1174			435457.96	171118.96			재설치
1175			435408.83	171192.50			재설치
1178			435373.39	171234.02			재설치
1179			435342.38	171274.96			재설치
1181			435315.82	171322.17			재설치
1182			435298.92	171356.23			재설치
1183			435241.71	171435.01			재설치
505			435206.73	171480.68			신설
506			433417.22	171048.36			신설
2686					880.78	-14597.86	신설
551			433129.42	170780.33			신설
2687					893.88	-14686.61	신설
2688					914.20	-14777.83	신설
2689					917.26	-14884.15	신설
2690					925.06	-14930.12	신설
935			435884.65	172154.27			신설
1017			435906.87	170646.16			신설
1032			436017.72	170466.67	-219.34	-17719.24	신설
1210			435062.74	170685.51			신설
1220			435073.93	170502.71			신설
1234			435100.61	170577.69			신설
1283			435421.97	173098.49			신설
1408			436283.87	169944.98	45.97	-18241.34	신설
1423			436521.17	170126.92			신설
2373			436520.81	168855.72	281.23	-19331.08	신설
2450			436577.31	168725.26	337.56	-19461.60	신설
2455			436549.66	168788.97	309.99	-19397.86	신설
기준점의 명칭				지적도근점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중부좌표, 가리좌표			
토지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설치일				2012. 9. 3 2012. 9. 7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1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 대로 960	건물군 분할에 의한 관련지번 변경	2012-05-22	인천신항으로 향하는 도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52, 353, 355, 356, 358, 359, 360, 361, 363, 364, 365, 366, 372, 375, 376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52, 353, 355, 358, 359, 360, 361, 363, 364, 365, 366, 372, 375, 376번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9.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1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56, 357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2	건물 분할	2012-05-22	인천신항으로 향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9.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669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9. 10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증가와 사건의 성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소송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여 공무집행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직무 중 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제3항의 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 연 락 처 : 전화 032-810-7052, FAX 032-810-706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번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민사소송 행정소송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800,000	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	
	5억원이상	4,500,000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이내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1,000,000	1. 고소·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착수금 의 100% 2.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될 경우 착수금의 120% 3.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될 경우 착수금의 80% 4.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2. 다수 관련사건	2,000,000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기 타	1. 인 지 대	실 액	
	2. 송 달 료	실 액	
	3. 검 증 비	실 액	
	4. 감 정 료	실 액	
	5. 기타비용	실 액	

※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 - 67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9. 10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증가와 사건의 성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정비하여 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2011.7.18)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확정된 사건인 경우 소요비용 반납 규정 신설(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 연 락 처 : 전화 032-810-7052, FAX 032-810-706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무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5장(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25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의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7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 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비용회수)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 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2항에 관한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2항에 관한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 대표자 구청장 000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신 청 서

1. 사 건

2. 당사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 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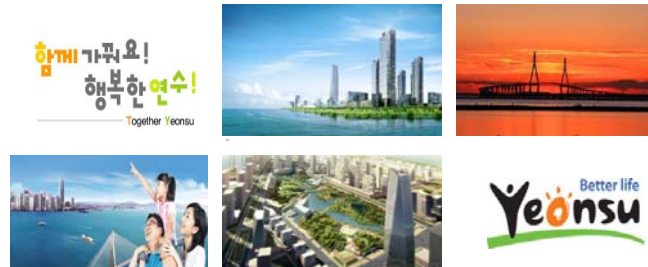
년 월 일

위임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 대표자 구청장 000

법원 귀중



2012년 연수구 지방재정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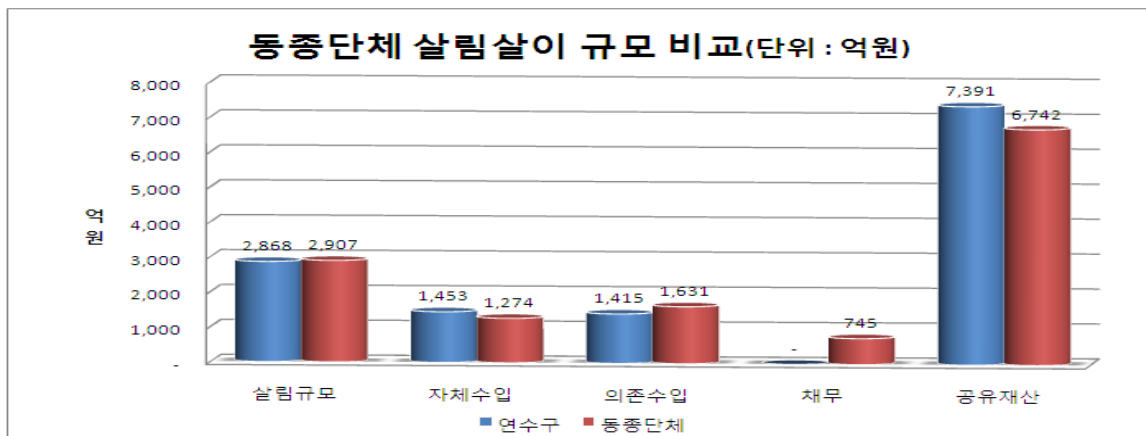


2012년 연수구 지방재정공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공시 제1호(2012. 8.31)

연수구청장(인)

- ◆ 우리 구의 '1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868억원으로, 전년대비 37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53억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¹⁾은 504천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415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0원입니다.
- ◆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1년도에 송국제도시유치원부지매입 외 165,484건 (196억원)을 취득하고, 부수지공원 화장실 외 4건(11억원)을 멸실 (매각)하여, 현재는 총 7,39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수입(74,597백만원)을 인구수(287,903명/2010년 12월말 기준)로 나눈값으로 재산세는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물건지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자치단체 간 구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단순 비교는 부적절함.

◆ 우리 구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2,907억원) 보다 3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274억원)보다 179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1,631억원)보다 216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745억원)보다 745억원 적고, 구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4천원)보다 24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6,742억원)과 비교하여 649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 구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7.4%이며 (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8% (전국 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 (지방세 (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살림규모는 적으나 채무가 전혀 없고 공유재산이 더 많아 안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 '12년 재정공시 작성 데이터는 '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세입 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백만원(또는 천원) 단위 작성시 합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3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3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7
③ 채권관리 현황(원금기준)	10
④ 기금운용현황	11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2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13
⑦ 통합재정정보	13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4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14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10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20
4. 특수공시 대상사업	34
※ 불입문서	6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1
㉡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63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66
㉣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72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PDF파일) 별도	

1

공통공시 총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자치단체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세 입	286,754	249,026	37,728	15.20%	913,822	309,156	290,723
	세 출	227,795	200,176	27,619	13.80%	786,573	261,566	241,436
②-1 지방채무(원금기준)		0	0	0	0%	131,916	4,456	7,452
②-2 일시차입금(원금기준)		0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2,853	2,663	191	7.10%	77,217	8,729	3,279
④ 기금운용 현황		10,714	9,837	877	8.90%	57,202	17,640	11,896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739,098	720,779	18,320	2.50%	2,409,930	1,037,086	674,218
	물 품	4,324	3,989	335	8.40%	8,682	5,372	4,873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989,171	963,684	25,487	2.60%	4,033,159	1,340,366	935,487
	부채총계	7,131	7,686	-555	-7.2%	182,288	23,386	22,729
	수익총계	237,258	195,693	41,565	21.20%	732,960	266,779	249,715
	비용총계	211,231	185,600	25,631	13.80%	626,555	247,421	221,914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116	1,384	-268	-19.4%	-7,464	1,443	2,437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하며 연수구는 구-3 그룹으로 우리구가 속한 동종단체는 인천 8개구, 울산 남구, 부산 강서구, 대전 유성구 등 22개구임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자치단체 평균	동종단체 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민주요관심항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37,333	35,487	1,847	5.20%	69,822	55,332	43,143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67	334	33	9.90%	685	658	386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80	457	23	5%	846	724	637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751	1,350	401	29.70%	3,584	1,040	909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4,373	38,681	-34,307	-88.7%	14,296	4,805	3,203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2,194	1,720	474	27.60%	4,782	4,376	2,653
	③-7 출연·출자금 현황	203	200	3	1.50%	9,911	327	408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5,079	4,126	953	23.10%	8,963	3,665	2,702
	③-9 연말지출 비율	3,661	6,346	-2,685	-42.3%	15,469	7,929	7,297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76,819	69,971	6,849	9.80%	63,939	29,309	29,874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951	720	231	32.10%	1,642	1,731	1,121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105,406	96,615	8,790	9.10%	166,018	114,813	110,187
	③-13 보증채무현황	0	0	0	0%	5,595	0	0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 및 동종단체 평균은 '11년도 금액을 기준

※ 자치단체 평균은 시·도 / 시·군·구 자치단체 수로 나눈 평균을 의미함

※ 동종단체 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하며 연수구는 구-3 그룹으로 우리구가 속한 동종단체는 인천 8개구, 울산 남구, 부산 강서구, 대전 유성구 등 22개구임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11년도)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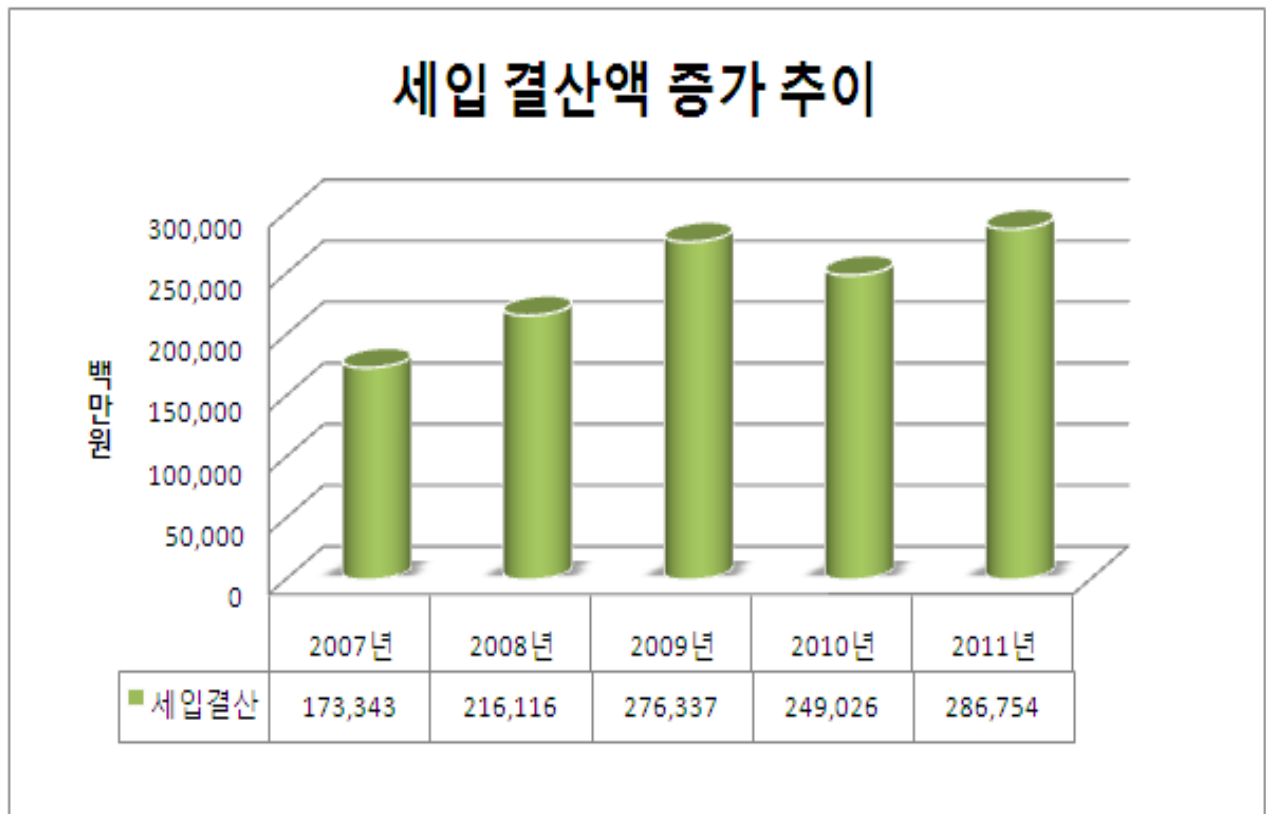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 제 수납액 (B)	B/A	미 수 납 액		
						계 (A-B)	불 납 결손액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282,591	314,871	286,754	91.10%	28,117	4,390	23,727
일 반 회 계	소 계	270,331	294,974	273,745	92.80%	21,229	2,908	18,321
	지 방 세	76,614	79,510	74,597	93.80%	4,912	99	4,813
	세외수입	55,789	74,319	58,002	78%	16,316	2,809	13,508
	지방교부세	2,964	5,826	5,826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086	32,486	32,486	100%	0	0	0
	보 조 금	102,878	102,833	102,833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특별회계	12,259	19,897	13,009	65.40%	6,888	1,482	5,406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4	619	425	68.60%	194	10	184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사업 특별회계	1,547	1,550	1,550	100%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10,319	17,728	11,034	62.20%	6,694	1,472	5,222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173,343	216,116	276,337	249,026	286,754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의 실제수납액임



●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 세입 주요 변동 사항

-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하였음

나. 세출결산 ('11년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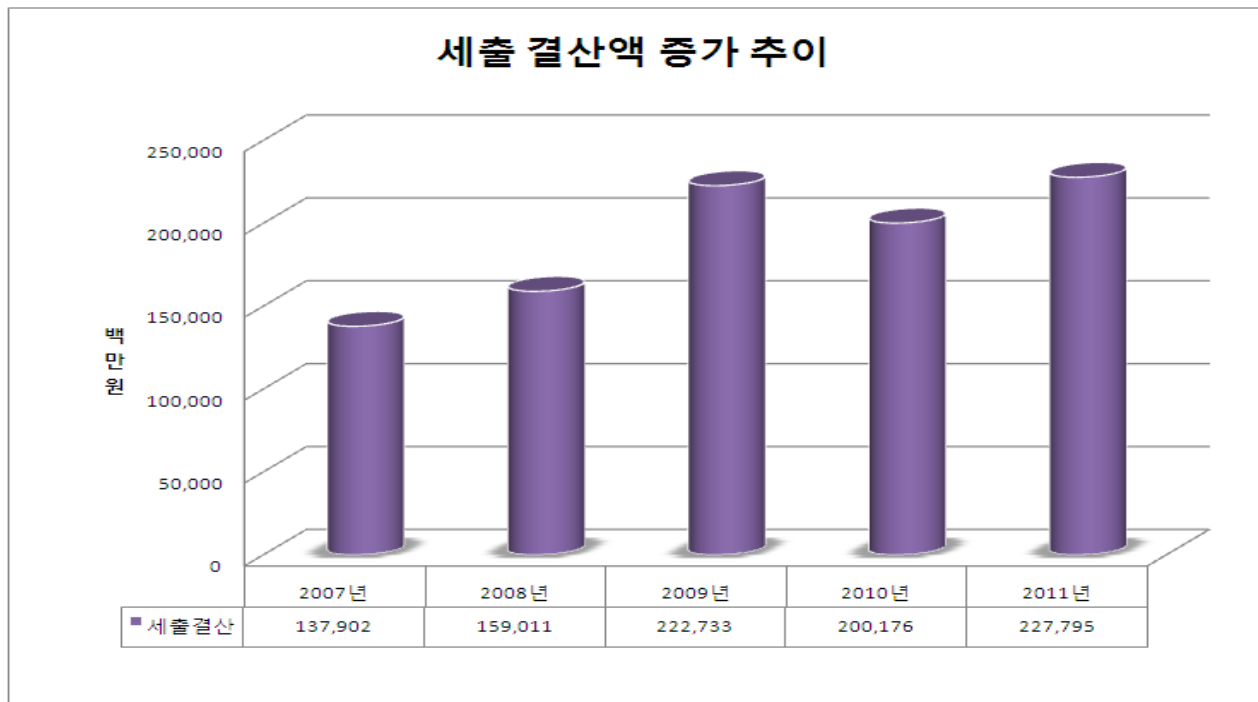
회계별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합 계		282,591	233,499	227,795	80.60%	13,082	41,713	14.80%
일반회계	소 계	270,331	230,596	224,920	83.20%	13,056	32,355	12%
	일반공공행정	32,889	29,744	27,290	83%	4,347	1,252	3.80%
	공공질서 및 안전	2,066	1,752	1,674	81%	74	318	15.40%
	교 육	7,181	7,032	7,032	97.90%	0	149	2.10%
	문화및관광	5,311	4,788	4,745	89.30%	0	566	10.70%
	환경보호	9,352	9,013	8,568	91.60%	0	784	8.40%
	사회복지	113,064	107,748	105,406	93.20%	4,523	3,135	2.80%
	보 건	8,147	6,705	6,703	82.30%	1,216	227	2.80%
	농림해양수산	3,416	2,910	2,909	85.20%	7	499	14.60%
	산업·중소기업	717	628	628	87.50%	0	89	12.50%
	수송 및 교통	12,025	8,608	8,336	69.30%	2,858	830	6.90%
	국토 및 지역개발	13,588	12,150	12,109	89.10%	29	1,449	10.7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22,035	0	0	0%	0	22,035	100%
	기 타	40,541	39,520	39,520	97.50%	0	1,021	2.50%
특 별 회 계		12,259	2,903	2,875	23.50%	26	9,358	76.3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4	379	379	96.30%	0	15	3.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47	1	1	0.10%	0	1,546	99.90%
주차장 특별회계		10,319	2,522	2,495	24.20%	26	7,798	75.60%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137,902	159,011	222,733	200,176	227,795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중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임



●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 세출 주요 내용

- 부수지근린공원 조성공사 시행
- 송도2동 주민센터 건축
- CCTV 설비 구매 및 설치 등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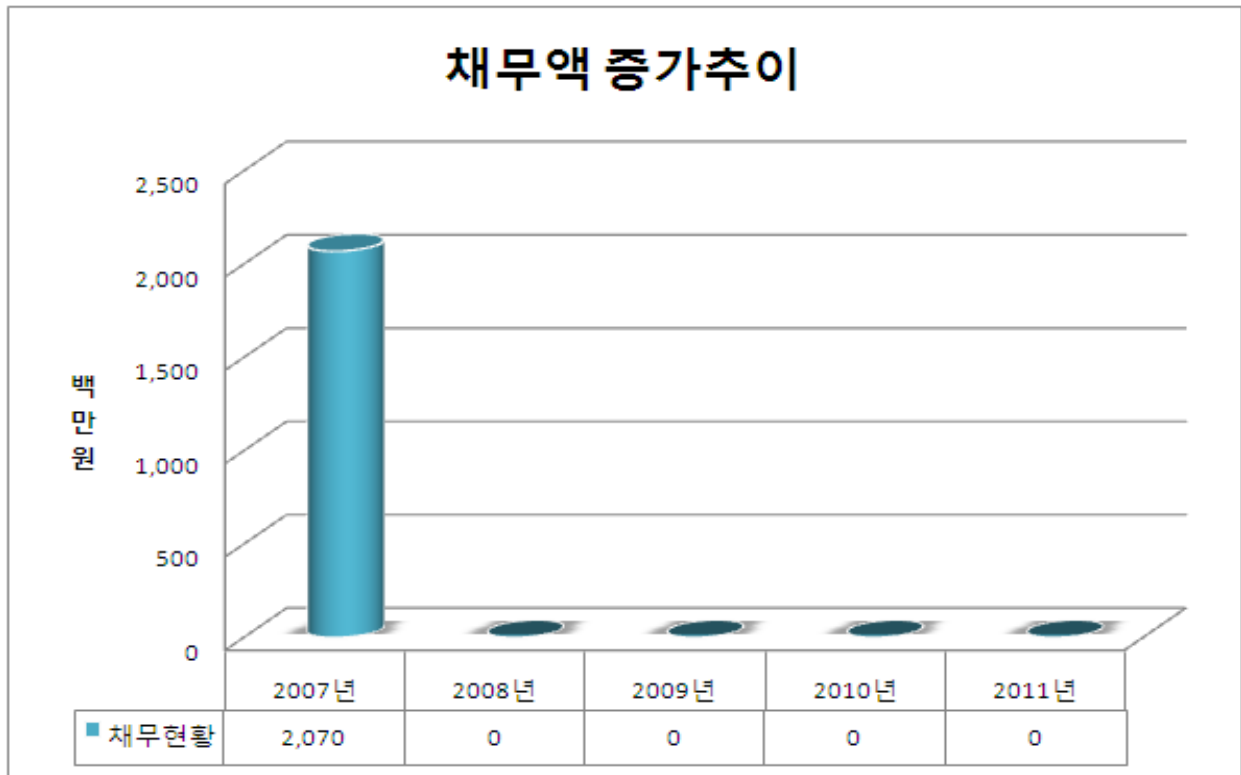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1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287,903	0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소 계	0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 '11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2,070	0	0	0	0

▶ 2008년도에 전액상환하여 현재 지방채무액이 없음



●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감액		
		계(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0	0
일반회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0	0	0
기금	소 계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 일시차입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입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③ 채권관리 현황(원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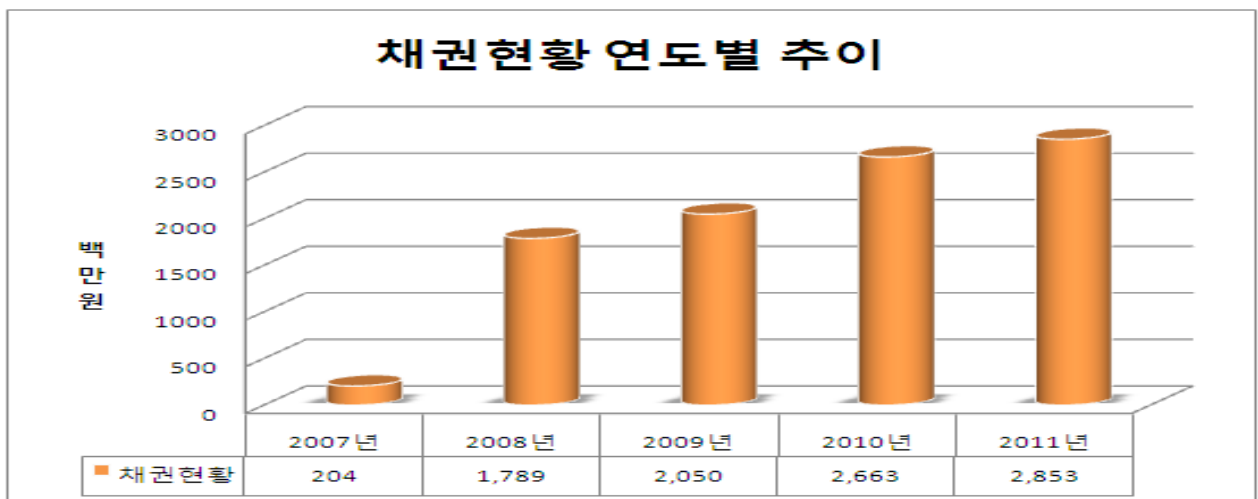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664	190	243	53	2,853
일반회계		2,435	184	205	20	2,619
특별회계	소 계	177	7	38	31	18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7	7	38	31	1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소 계	52	-2	0	2	50
	사회복지기금	52	-2	0	2	5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1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임

❖ 연도별 비교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채권현황	204	1,789	2,050	2,663	2,85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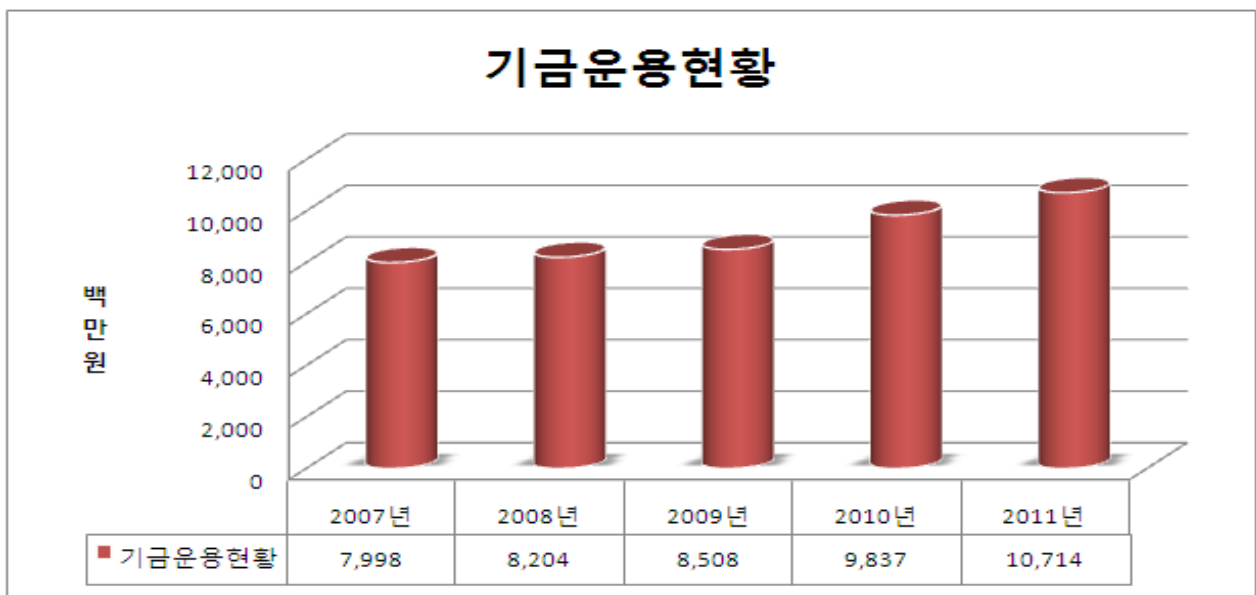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1년도 현재액 (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850	864	1,226	363	10,714
사회복지기금	5,011	98	220	122	5,109
여성발전기금	400	400	400	0	800
옥외광고정비기금	13	0	0	0	13
문화예술진흥기금	2,122	17	87	70	2,139
식품진흥기금	840	78	169	91	917
재난관리기금	1,465	270	351	80	1,735

▶ '1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금운용현황	7,998	8,204	8,508	9,837	10,71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임



●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154	720,779	165,484	19,581	11	1,262	176,627	739,098	
토 지	853	221,585	65	8,792	5	0	913	230,377	
건 물	78	85,945	9	4,271	4	1,152	83	89,064	
입 목 축	2,828	102,625	165,250	18	0	0	168,078	102,642	
공 작 물	7,380	310,210	155	6,324	0	0	7,535	316,533	
기계기구	2	110	0	0	2	110	0	0	
선 박	0	0	0	0	0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3	304	5	177	0	0	18	481	

▶ '1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0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24	3,989	29	388	3	52	350	4,324	
구 매	324	3,989	29	388	3	52	350	4,324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물품의 주요 증가사유는 차량구입 전산장비 등의 신규구입에 따른 것임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2011회계연도)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 “PDF파일 별도”

⑦ 통합재정정보 (예산편)

(단위 : 백만원, '11년 최종예산기준)

회 계 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233,842	268,630	1	0	-1	35,901	268,628	-34,785	1,116
일반회계	230,849	256,636	0	0	0	27,146	256,636	-25,786	1,360
기타특별회계	2,374	11,614	1	0	-1	8,755	11,613	-9,238	-483
기 금	618	378	0	0	0	0	378	239	239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 통합재정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연 수 구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I.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9%	-1.40%	-3.84%
		2. 경상수지비율	88.72%	70.73%	118.37%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22.23%	2.98%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14%	2.96%	0.32%
		5. 장래세대부담비율	0.55%	4.42%	1.27%
		6. 자체세입비율	20.09%	28.79%	19.59%
		6-1. 자체세입 증감률	3.03%	5.85%	1.57%
II.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41	0.9981	1.0018
		8. 지방세채납액 축소 노력도	-0.6634	-0.3109	-0.3156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197	1.0433	1.0200
		10. 세외수입채납액 축소 노력도	-0.0668	-0.0688	-0.067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64	0.9978	0.9780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19	0.0276	0.0339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52	0.1334	0.1607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386	0.2058	0.251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515	-0.0747	-0.1454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632	-0.0280	-0.1959
III.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6.72%	97.50%	97.70%
		18. 예산집행률	82.51%	86.99%	86.4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9.97%	44.37%	26.74%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0.00%	58.09%	72.3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자체심사 포함)	73.99%	61.19%	74.70%

● 재정분석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 ▶ 재정분석결과는 2011년도(회계년도 2010년)분석결과임
- ▶ 통합재정수지나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매우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채 관련 지수들도 자치구 평균 이하로 재정건전성은 타 자치구들에 비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세입 측면에서는 특히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및 지방세채납액 축소 노력도가 타 자치구들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않으며, 세출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절감노력도가 평균 이하이며, 특히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는 매우 낮음
- ▶ 재정계획성도 모든 지표값들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재정계획성이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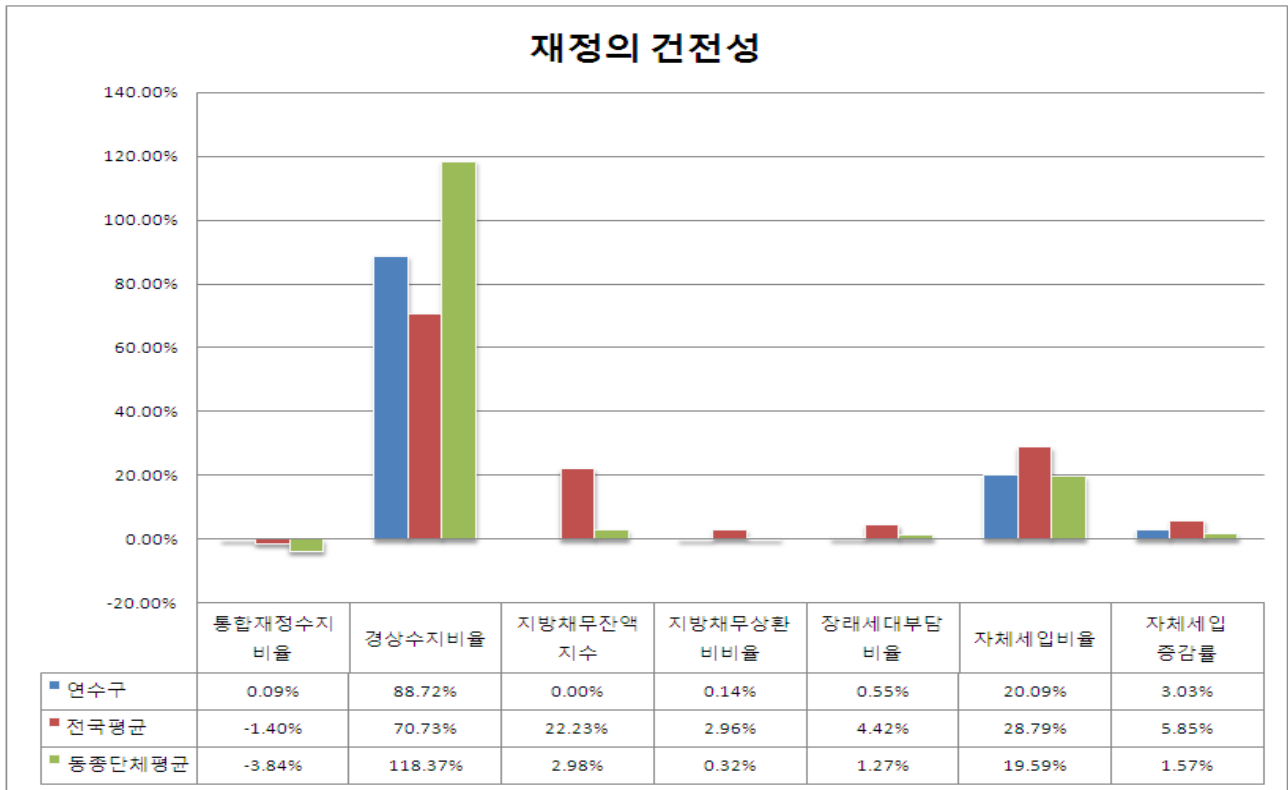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 지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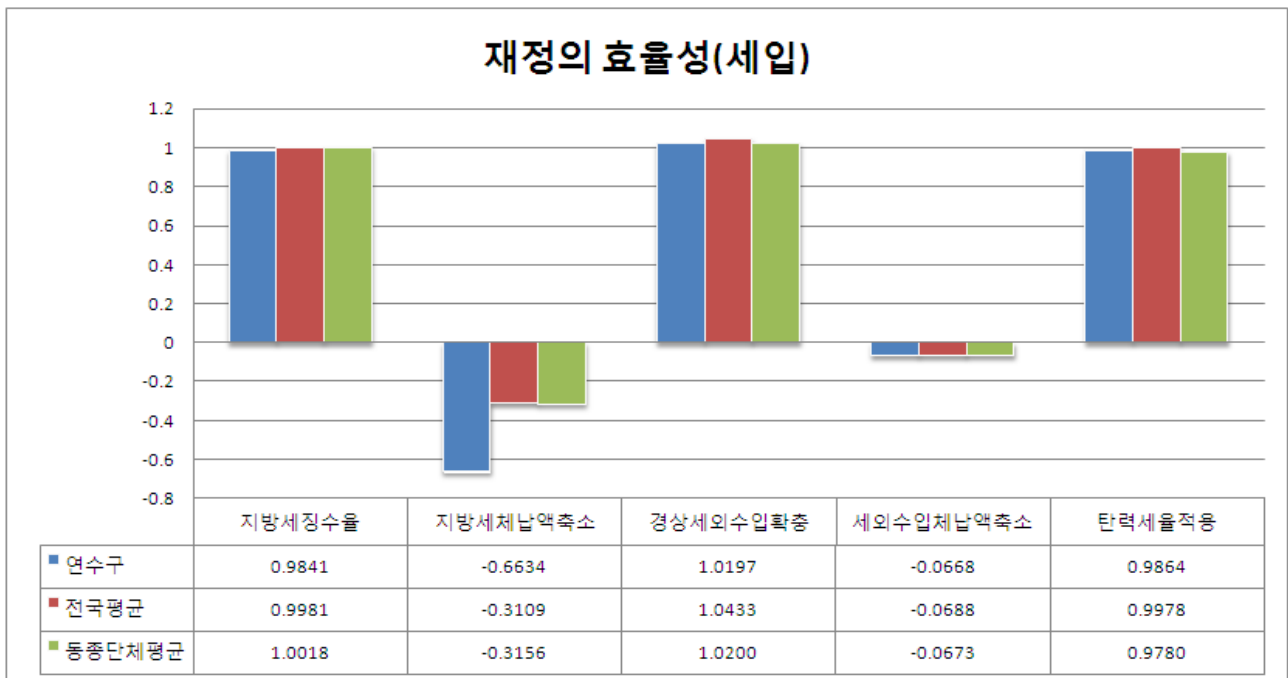
지 표 명	지표값	핵심사항
통합재정수지	0.09%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악화 되었음
경상수지비율	88.72%	지속적인 재산세 수입 증가로 인하여 경상지출 대비 경상수입의 비율이 88.72에 불과하여 양호함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지방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채무부담이 없음

□ 미흡 지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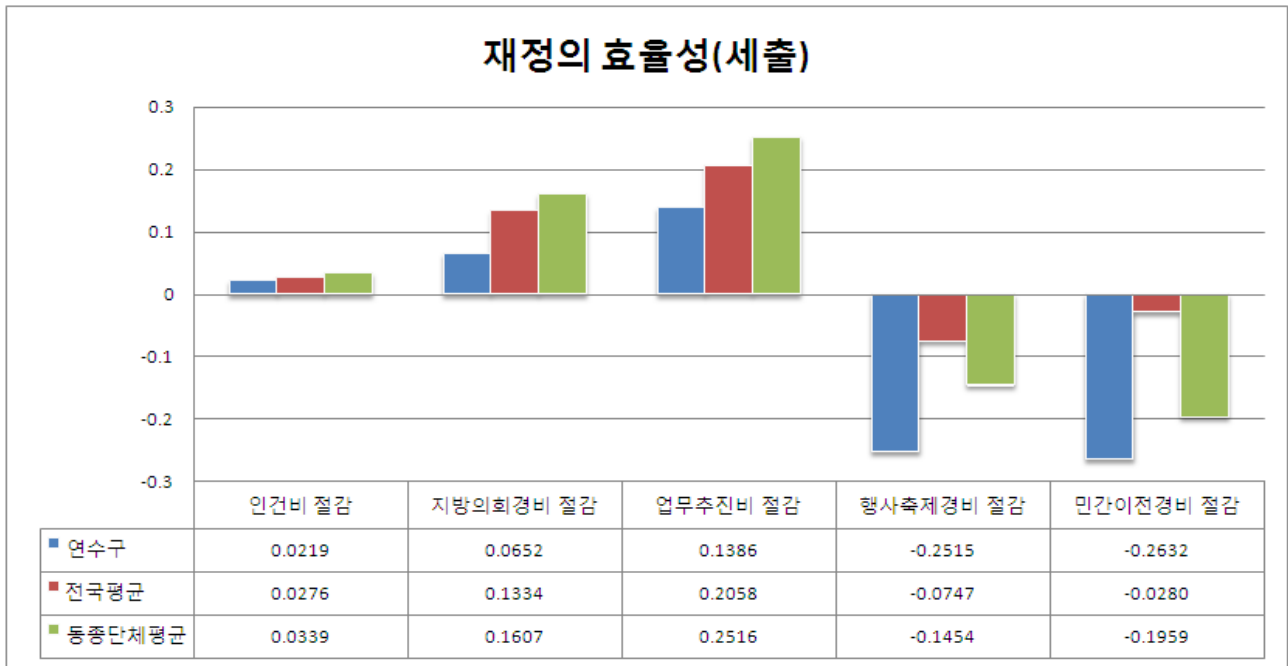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41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는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2010년에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28억원의 지방세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5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도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임
예산집행률	82.5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치구 평균인 86.43%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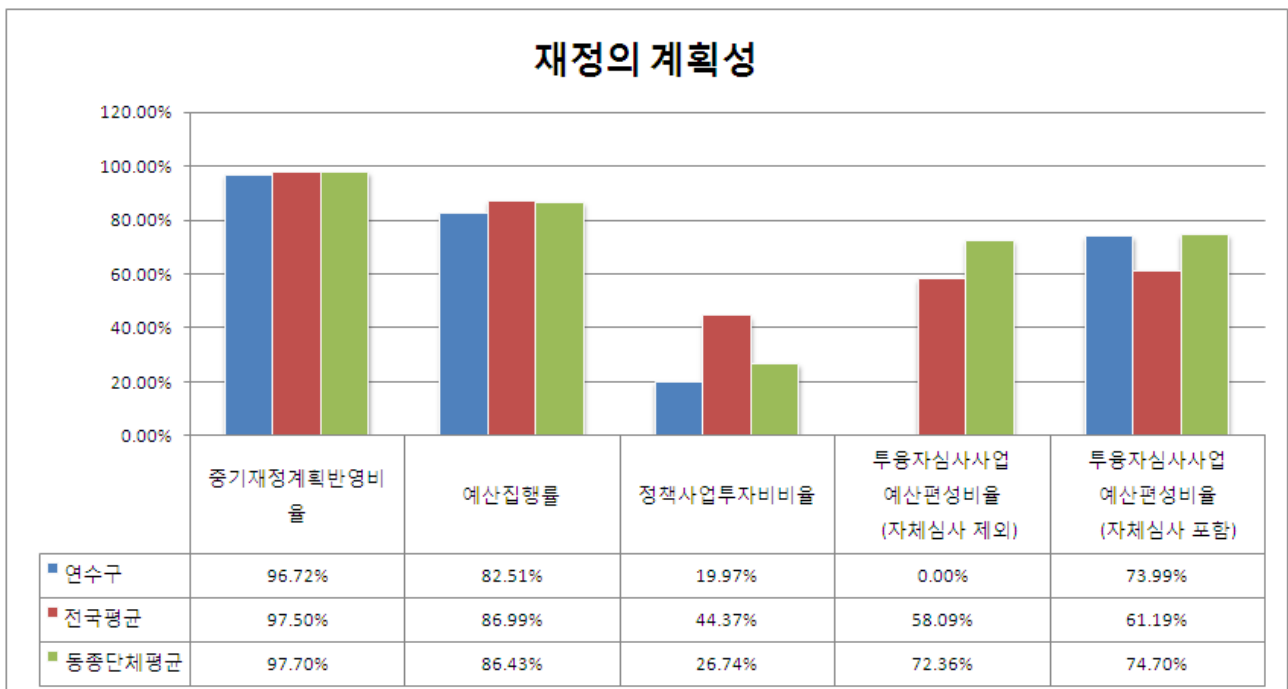
◆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 부담비율 모두 양호한 상태로 아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평균에 비해 낮고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모두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 예산집행률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정책사업투자비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좋지 않은 수준임.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text{세입}-\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text{지방채무 잔액} / \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text{부채총계} / \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times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 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 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text{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 징수결정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지방세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지방세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차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채납액 축소노력	$\{1 - (\text{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text{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채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text{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 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text{전년도 업무추진비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행사·축제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text{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text{민간이전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text{최종사업예산액} / \text{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times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text{세출결산액} / \text{예산현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 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출	$\text{투자지출액} / \text{정책사업비 결산액} \times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년도	감사주체	지적사항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비고
2011	행정안전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적정	초과지원분 회수	회수 완료 (183천원)	
20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권제한토지 재산세 등 감면 미이행	경감 및 감면분 환급	환급 완료 (25건/33,536천원)	
2011	“	증개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누락	과세 누락분 추징	부과 완료 (7건/5,372천원)	
2011	“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과세누락	과세 누락분 추징	부과 완료 (1건/1,509천원)	
2011	“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누락	과세 누락분 추징	직권과세 완료 (3건/531천원)	
2011	“	주유시설, 선박 등 재산세 누락	과세 누락분 추징	직권고지 완료 (5건/1,800천원)	
2011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누락	과세 누락분 추징	직권과세 완료 (5건/5,483천원)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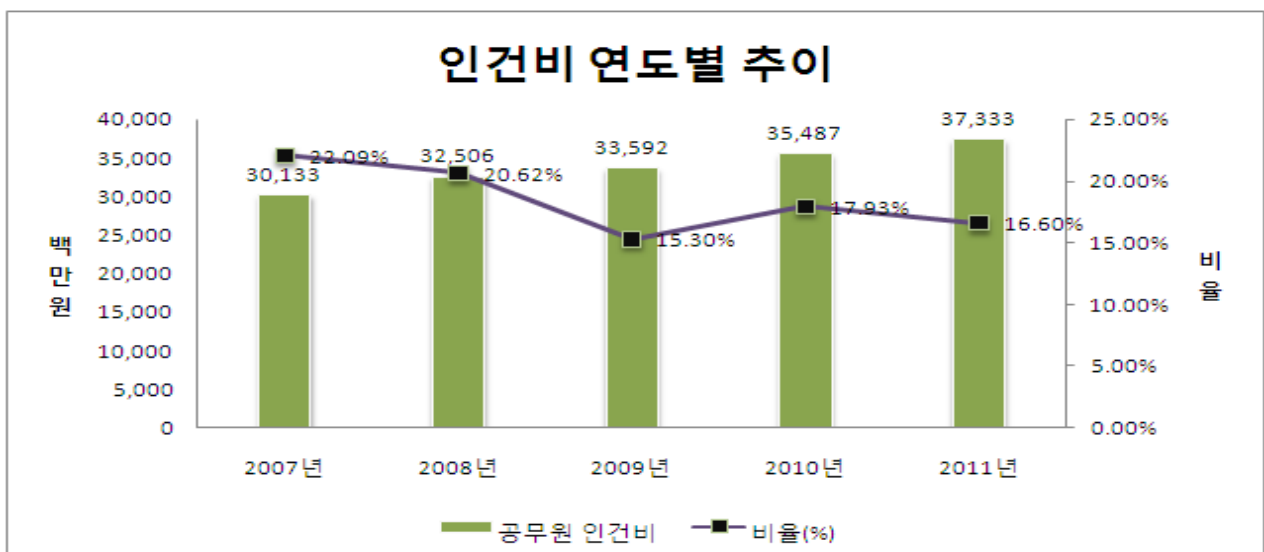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4,920	37,333	16.60%	
보수(101-01)		25,129	11.17%	
기타직보수(101-02)		1,259	0.56%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527	2.01%	
직급보조비(204-02)		1,068	0.47%	
성과상여금(303-02)		1,556	0.69%	
연금부담금(304-01)		2,798	1.24%	
국민건강보험금(304-02)		997	0.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임.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36,425	157,617	219,568	197,912	224,920
공무원 인건비	30,133	32,506	33,592	35,487	37,333
비율(%)	22.09%	20.62%	15.30%	17.93%	16.60%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 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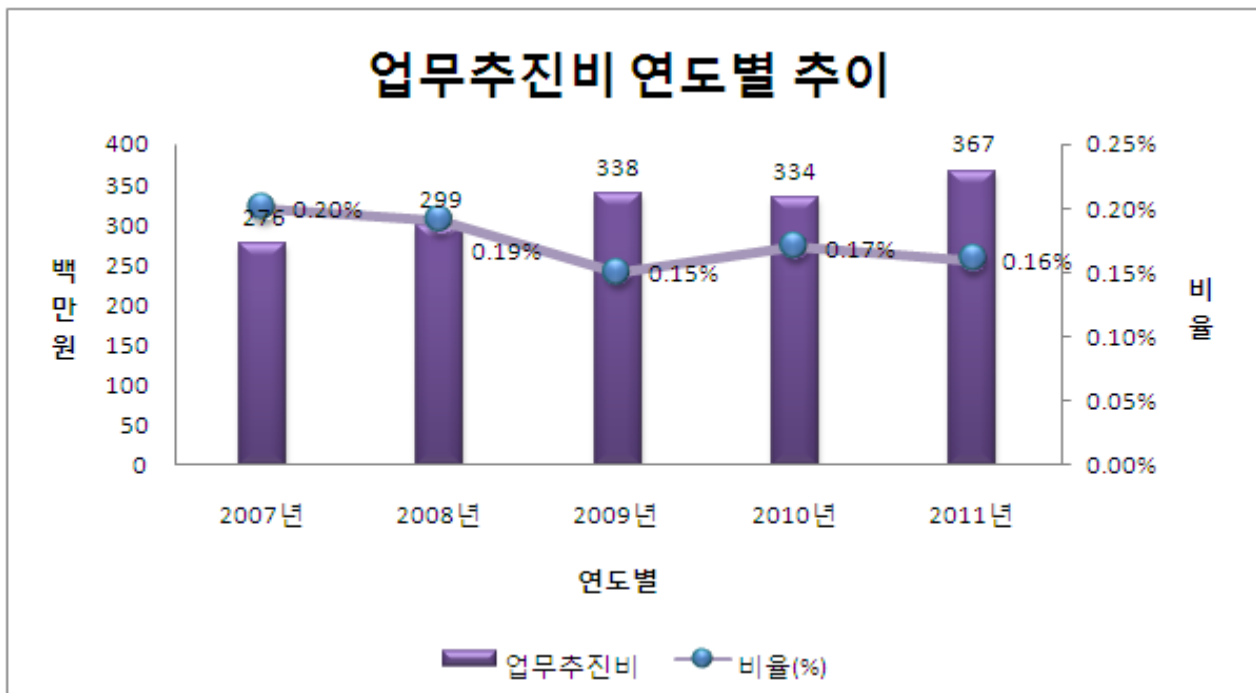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4,920	367	0.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6	0.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80	0.08%	

- ▶ '11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임
- ▶ '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붙임"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36,425	157,617	219,568	197,912	224,920
업무추진비	276	299	338	334	367
비율(%)	0.20%	0.19%	0.15%	0.17%	0.16%



☞ 조직개편 등으로 시책수요가 증가하여 총액은 늘었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낮아졌음.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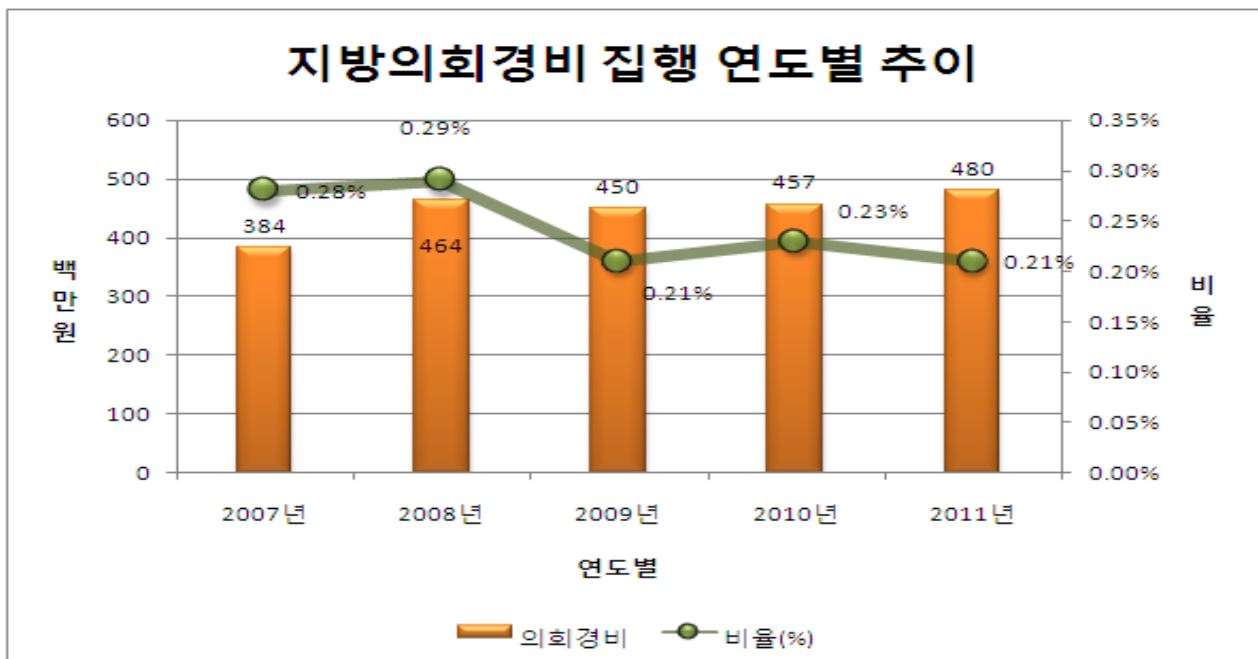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24,920	480	0.21%	
의정활동비(205-01)		119	0.05%	
월정수당(205-02)		197	0.09%	
국내여비(205-03)		11	0%	
국외여비(205-04)		23	0.01%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52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60	0.03%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5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7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6	0%	

▶ 의원 정원 : 9명 ('11.12.31일 현재)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36,425	157,617	219,568	197,912	224,920
의회경비	384	464	450	457	480
비율(%)	0.28%	0.29%	0.21%	0.23%	0.21%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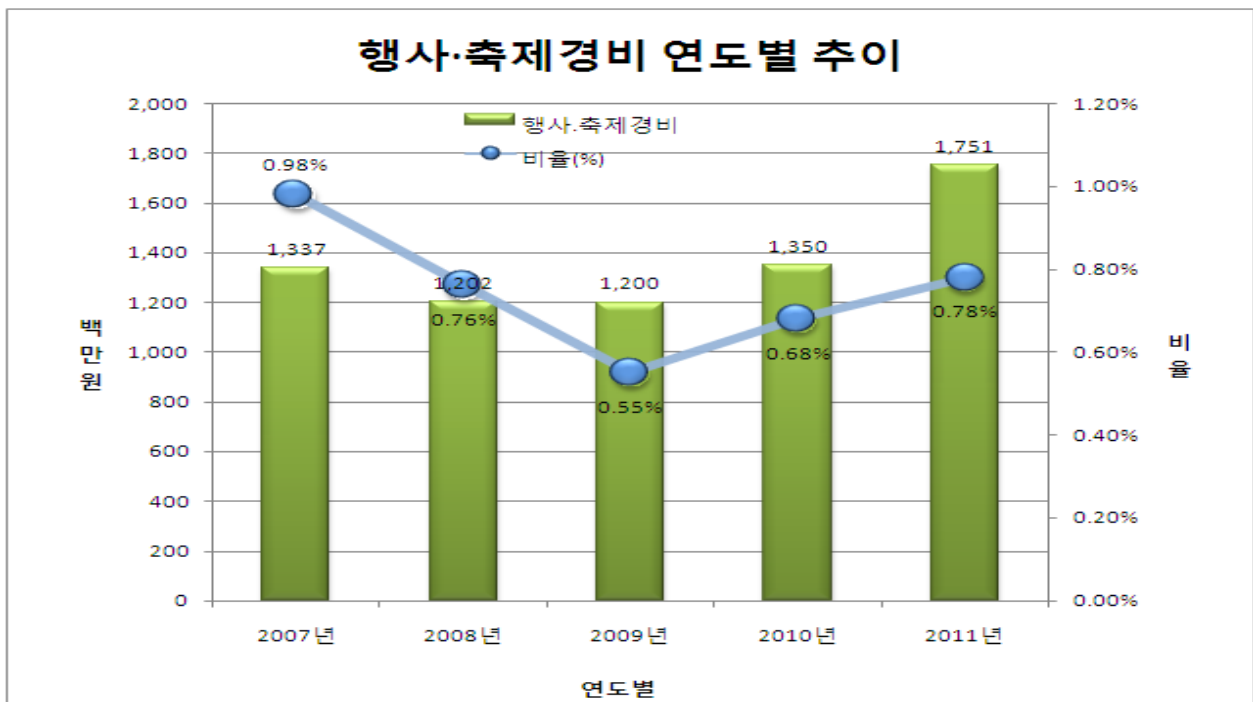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4,920	1,751	0.78%	
행사운영비(201-03)		692	0.31%	
행사실비보상금(301-10)		519	0.23%	
민간행사보조(307-04)		539	0.24%	
행사관련시설비(401-04)		0	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민간행사보조(307-04) 세부 집행내역 “붙임”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36,425	157,617	219,568	197,912	224,920
행사·축제경비	1,337	1,202	1,200	1,350	1,751
비율(%)	0.98%	0.76%	0.55%	0.68%	0.78%



- ▶ 2011세계모의유엔회의관련 행사, 드림스타트 하계캠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이 주된 이유임.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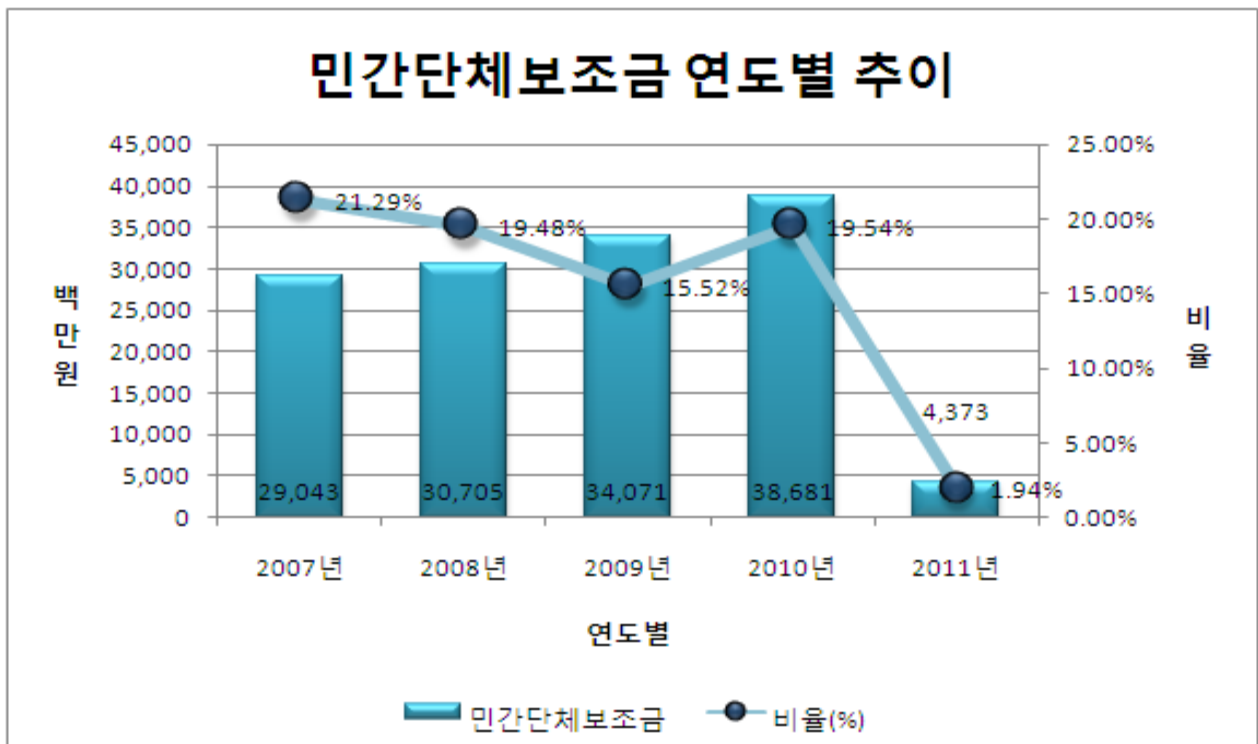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고
합 계	224,920	4,373	1.94%	
민간경상보조(307-02)		3,553	1.58%	
사회단체보조금(307-03)		281	0.12%	
민간행사보조(307-04)		539	0.24%	

-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임
- ▶ 민간경상보조(307-02) 세부 집행내역 “붙임”

❖ 민간단체 보조금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36,425	157,617	219,568	197,912	224,920
민간단체보조금	29,043	30,705	34,071	38,681	4,373
비율(%)	21.29%	19.48%	15.52%	19.54%	1.94%



- ▶ '11년도 민간이전경비(307) 예산과목에서 보조금 중 주민복지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의무적 경비 및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보조금” 과목이 신설되어 연도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함.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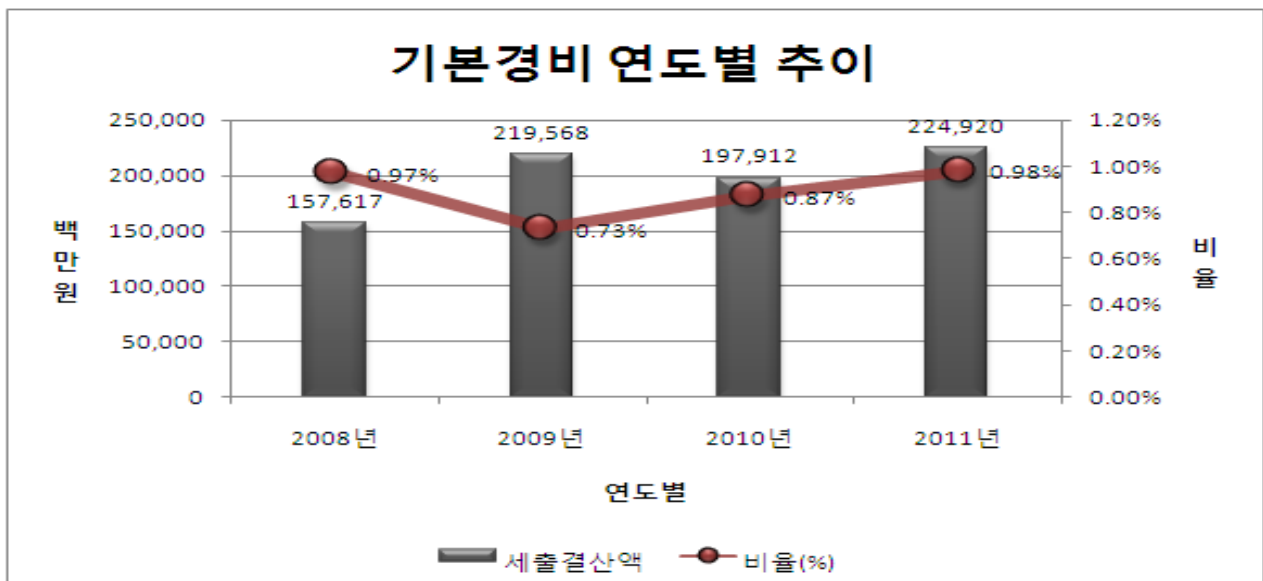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4,920	2,194	0.98%	
사무관리비(201-01)		798	0.35%	
공공운영비(201-02)		334	0.15%	
국내여비(202-01)		494	0.22%	
월액여비(202-02)		0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6	0.08%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32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31	0.06%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84	0.04%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134	0.06%	

- ▶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 항목에 일부항목 추가됨(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57,617	219,568	197,912	224,920
기본경비	1,534	1,600	1,720	2,194
비율(%)	0.97%	0.73%	0.87%	0.98%

-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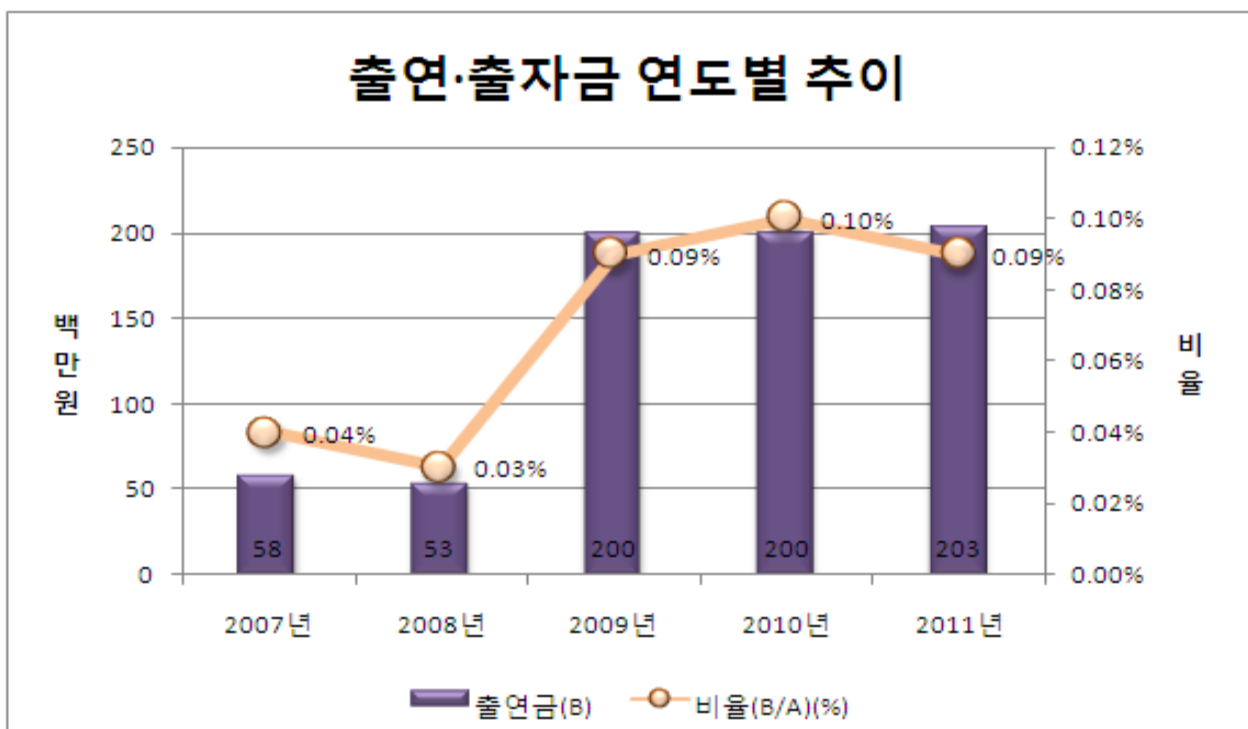
구 분	세출결산액(A)	출연금		출자금		비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일반회계	228,158	203	0.09%	0	0%	

-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임
- ▶ '11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 “붙임”

❖ 출연금, 출자금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A)	138,212	159,748	223,196	200,582	228,158
출연금(B)	58	53	200	200	203
비율(B/A)(%)	0.04%	0.03%	0.09%	0.10%	0.09%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총액(D)	0	0	0	0	0
비율(C/A)(%)	0%	0%	0%	0%	0%

-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결산서 참조)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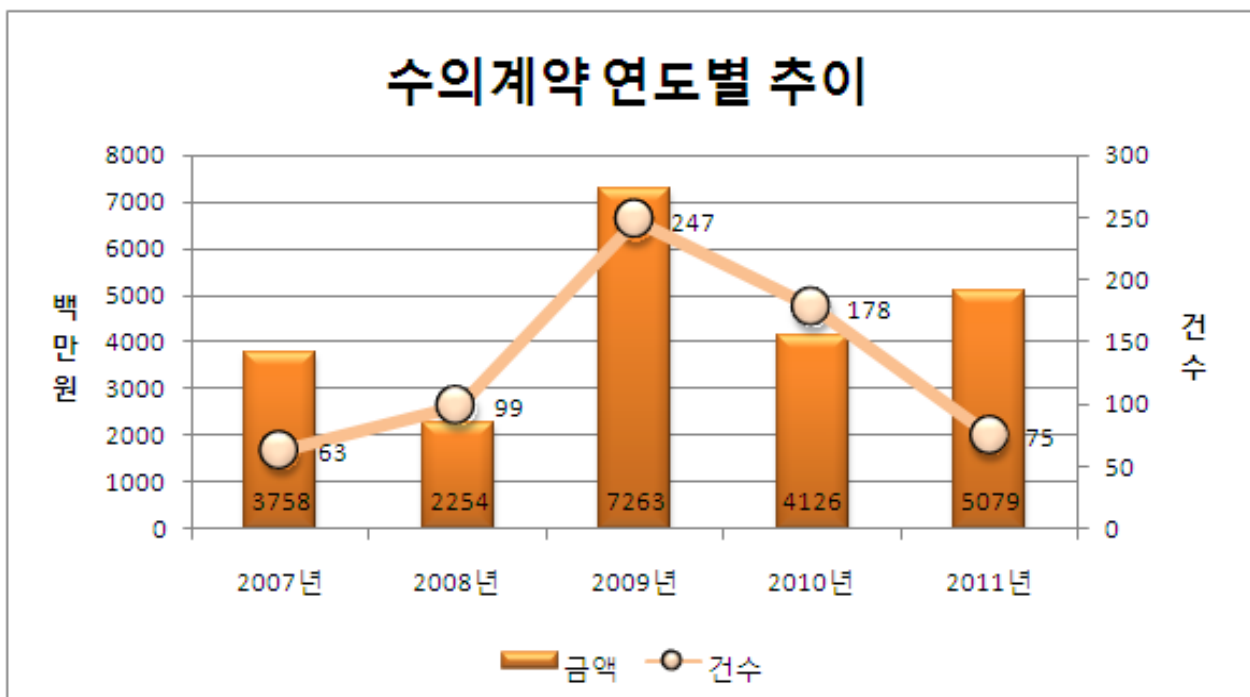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1년	526	40,343	75	5,079	14.26%	12.59%	

-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임
-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수	63	99	247	178	75
금 액	3758	2254	7263	4126	5079



- ▶ 전년도와 비교시 수의계약 건수는 급격히 줄어듦

③-9. 연말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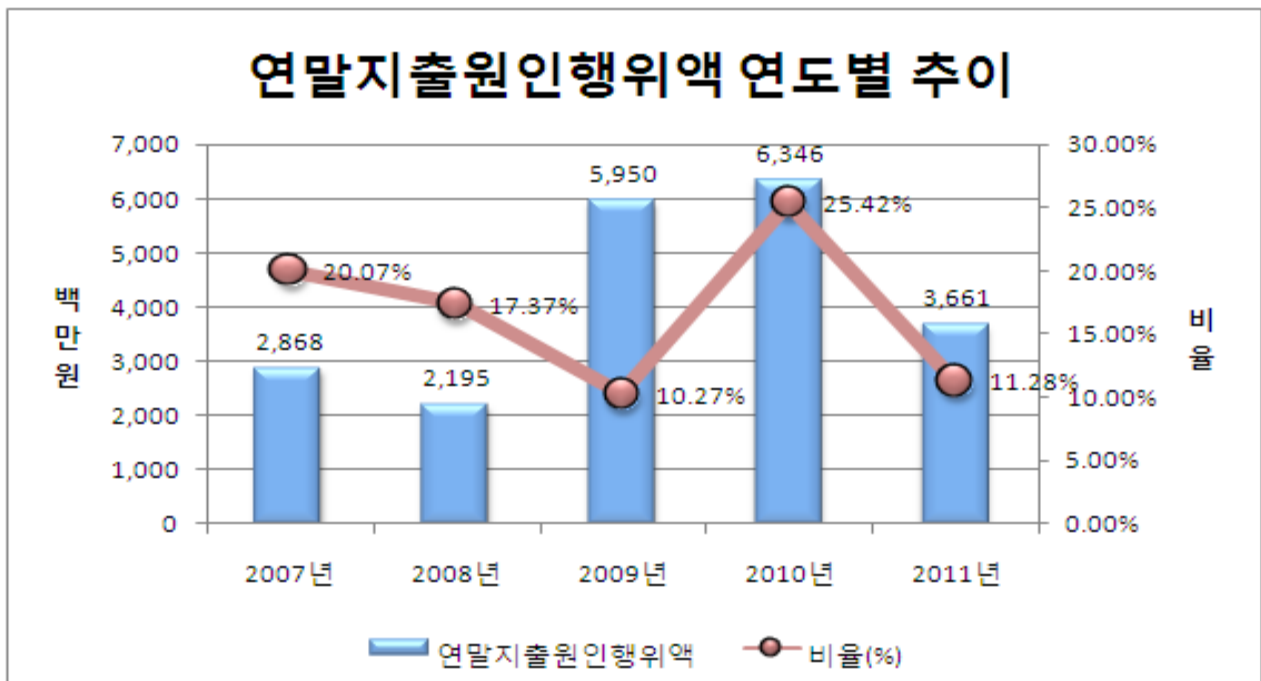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합 계	32,454	3,661	11.28%
시설비(401-01)	32,321	3,546	10.97%
감리비(401-02)	6	93	1,550.00%
시설부대비(401-03)	127	22	17.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4,287	12,635	57,912	24,963	32,454
연말지출원인행위액	2,868	2,195	5,950	6,346	3,661
비율(%)	20.07%	17.37%	10.27%	25.42%	11.28%



☞ 연말지출 비율은 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11년도말 연말지출은 송도2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추진이 주된 이유임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비과세·감면액(A)		76,819	69,971
	비과세	53,709	52,914
	감면	23,110	17,056
지방세 징수액(B)		74,597	33,249
비과세·감면율(A/(A+B))		50.73%	67.79%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1년도		2010년도		증감	
	2011년도 (A)	구성비(%)	20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76,819	100.00%	69,971	100.00%	6,849	9.79%
일반공공행정	49,344	64.23%	48,215	68.91%	1,129	2.34%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739	6.17%	946	1.35%	3,794	401.18%
문화 및 관광	797	1.04%	579	0.83%	217	37.5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23	0.81%	445	0.64%	178	40.00%
보건	66	0.09%	41	0.06%	24	58.19%
농림해양수산	100	0.13%	57	0.08%	43	75.64%
산업·중소기업	13,568	17.66%	13,783	19.70%	-214	-1.56%
수송 및 교통	72	0.09%	42	0.06%	30	70.66%
국토 및 지역개발	1,309	1.70%	1,280	1.83%	29	2.28%
과학기술	25	0.03%	17	0.02%	8	48.11%
국가	6,130	7.98%	4,507	6.44%	1,623	36.0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5	0.06%	57	0.08%	-12	-21.18%

-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76,819	61,806	53,709	8,097	14,935	79
보 통 세	보통세소계	76,819	61,806	53,709	8,097	14,935	79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438	367	167	199	71	0
	재산세	74,777	60,029	52,817	7,212	14,712	37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165	1,069	525	544	96	0
	등록면허세	439	341	199	142	56	42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목적세소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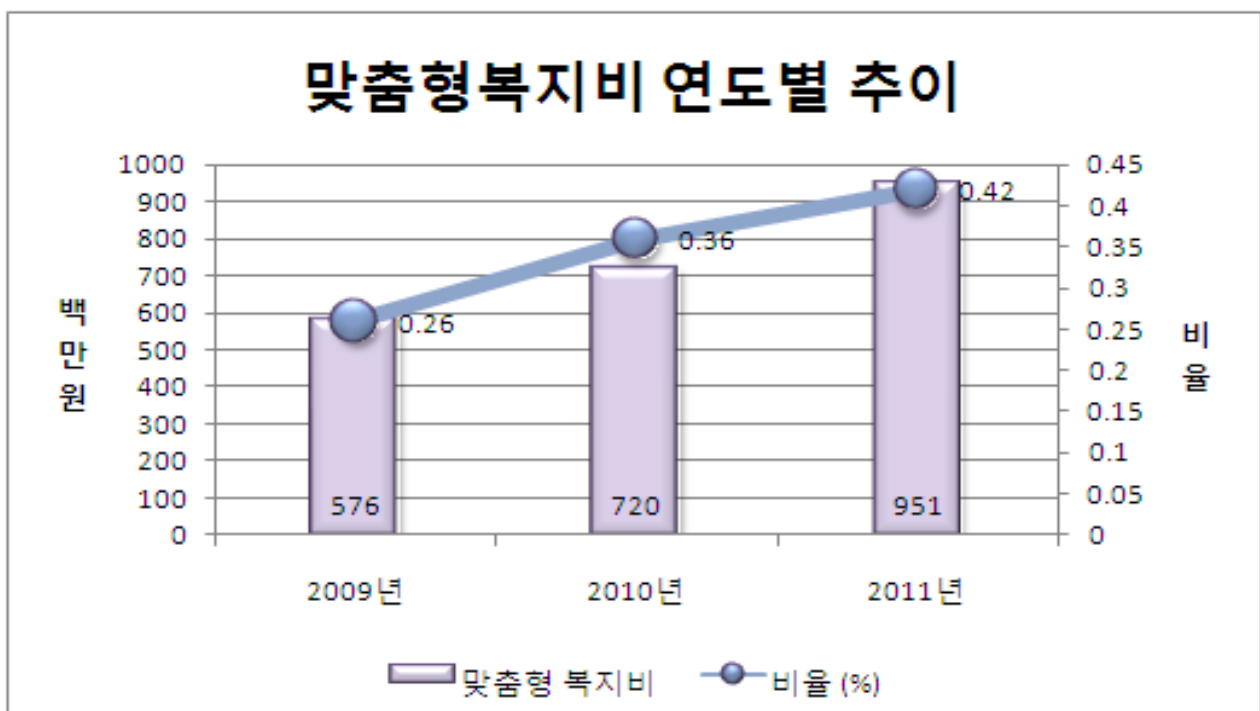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1년	786	224,920	951	0.42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함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대상인원 (A)	707	751	786	
세출결산액 (B)	219,568	197,912	224,920	
맞춤형 복지비	576	720	951	
비율 (%)	0.26	0.36	0.42	
1인당 평균배정액 (C/A)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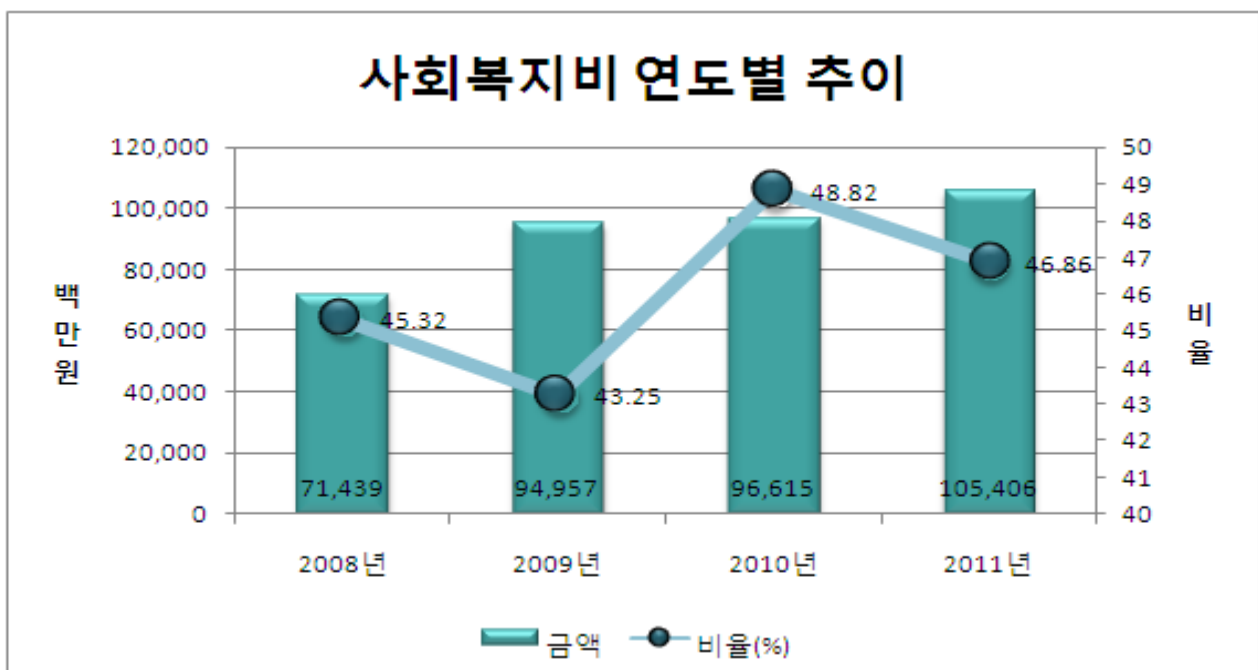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일반 (089)
계	105,406	29,762	19,167	28,155	24,175	2,276	815	36	1,020
국비	57,469	26,074	5,403	13,123	11,702	453	0	27	687
시비	30,037	2,114	11,992	8,736	6,764	287	0	2	142
구비	17,900	1,574	1,772	6,296	5,709	1,536	815	7	191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출결산액	157,617	219,568	197,912	224,920
금액	71,439	94,957	96,615	105,406
비율(%)	45.32	43.25	48.82	46.86



☞ 사회복지분야 집행액 증가의 주된 이유는 무상보육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임.

③-13. 보증채무 현황 : 없음 (2007~2011년 현재까지 없음)

● 보증채무부담행위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431,253	274,124	275,787	285,313	295,494	300,535	2.30%
자체수입	667,782	135,510	130,571	132,141	133,513	136,047	0.10%
의존수입	763,469	138,613	145,216	153,171	161,981	164,488	4.4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세 출	1,431,253	274,124	275,787	285,313	295,494	300,535	2.30%
경상지출	349,682	74,320	61,592	65,371	72,233	76,166	0.60%
사업수요	1,081,571	199,804	214,195	219,942	223,261	224,369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text{※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Rightarrow [(100.5 / 79.5) ^{(1/4)} -1] * 100 = 6.04\%(\text{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

- ① 교육경비보조금
- ②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
-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현황
- ④ 업무용 건축물 매입
- ⑤ 사회복지 기금운용 현황
- ⑥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 ⑦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 ⑧ 식품진흥 기금 운용 현황
- ⑨ 재난관리 기금 운용 현황
- ⑩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 ⑪ 능허대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 ⑫ 승기천변 꽃길조성
- ⑬ 연수둘레길 조성사업
- ⑭ 늘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후 공원복구 공사

-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연수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규모 :
 - 지원대상 : 49개 초·중·고·특수학교 및 29개 사립유치원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 지원..... 연차별 확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응투자 12개 학교
 - 거점형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3개 학교
 - 사립유치원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29개 유치원 225여명
- 사 업 비 : 2,614백만원

□ 추진사항

-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 1,800,000천원
 - 1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2011. 3월) : 43개교, 29개 유치원/1,228,772천원
 - 2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2011. 4월) : 5개교/64,585천원
 - 3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2011. 6월) : 39개 학교/393,481천원
 - 4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2011. 9월) : 3개교/ 66,762천원
 - 5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2011. 11월) : 4개교/53,600천원
 - 학교도서관 관계자 보수교육 실시 : 3회/70명
 - 교육내용 : 학교도서관의 중요성 및 사서의 역할,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자료관리 실제, 도서관프로그램 실습 등
 - 학교도서관 사서배치사업 현지확인 실시 : 38개교/1회

- 유치원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중간점검을 위한 간담회 실시 : 1회
-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 1회
-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검사(1차) 실시 : 33개교, 21개유치원, 51개사업
- 유치원 상,하반기 동극연극단 문화공연 개최 : 각 3,500여명

「대통령은 누구, 「반디불이 허수아비」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대응투자 : 12개학교 / 300,000천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학교 중간점검 실시 : 1회/12개교

○ 사립유치원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 223명 / 123,855천원

○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 3개교 / 390,000천원

☐ 기대효과

- 수요자중심의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현안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및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사업비	8,771	1,771	1,501	2,614	2,885

- ❖ 국제도시 어린이 외국어 특화도서관 구축
- ❖ 국제화시대의 상상력과 지식을 키워주는 혼합형 도서관 운영
- ❖ 외국어 특화공간 "Global Village" 등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요람 운영

□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송도동 2-1 새아침공원 內)
-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위탁)기간 : 2011년 ~ 2016년(5년)
- 건축규모 : 돔형 지상2층
 - 건축면적 : 908.29㎡, 연면적 : 1,702.61㎡
- 총사업비 : 2,843백만원 (※2011~2012년도)

□ 추진사항

- 자료 확충 사업
 - 어린이 대상의 신간도서·추천도서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의 육아, 독서지도 등 교육 분야 전문 장서개발
 - 어린이 영어도서, 다문화도서, 건강도서 등 특화자료 개발로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
 - 전자자료,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확충으로 정보접근성 강화
 - 사업비 : 226,670천원 (도서 200,000천원, 비도서 26,670천원)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기념 문화행사
 - 글로벌빌리지 페스티벌, 오디오북체험부스, 동화가있는영화상연전, 국악체험극, 건강인형극, 영어인형극 총6개 행사
 - 사업비 : 3,390천원

○ u-Library 정보화 서비스 환경 구축

- 전산장비(정보화 구축사업) 구축

○ 책 읽는 문화도시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 하나의 회원증으로 인천 내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실시/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 휴대기기를 통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전자책, 오디오북 스마트 서비스 이용 강화

○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한 독서진흥

- 어린이 독서문화 행사 개최

- 학부모 독서문화 행사 개최
-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 일요영화상영

- 스토리 타임 운영

- 대 상 : 도서관을 오전에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 및 부모
- 참여방법 : 스토리타임 시간에 도서관 방문한 이용객이 자유롭게 참여

- “생애 첫 독서 회원증” 시행

- 동사무소에서 받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취합하여 익월 카드 발급하여 우편송달
- 대 상 : 연수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
- 장 소 : 연수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

○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창의적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영어) 15개 프로그램 및 독서 8개 프로그램 진행으로 250여명 수강

○ 세계 문화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 외국문화와 접목한 도서관 문화 행사 개최
- 동화와 외국의 문화를 접목한 행사로 외국 문화에 간접경험 제공

☐ 기대효과

-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 도서관 인프라 고도화 및 지식경쟁력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형 도서관 구현
-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전문성 강화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2,843	-	-	1,753	1,090

☐ 위치도



- ❖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창달
- ❖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관내
- 사업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추진사항

- 지원계획 : 25건 70,000천원
- 추진실적 : 25건 69,519천원
- 세부지원현황(2011년)

연번	성명(단체명)	지원금액
1	김갑용	3,000,000원
2	김기충	3,000,000원
3	이상하	3,000,000원
4	송준일	3,000,000원
5	김낙준	3,000,000원
6	김월준	2,000,000원
7	연수문학회	3,000,000원
8	연수수채화사월회	2,850,000원
9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2,900,000원
10	한국사회교육원 연수지부	3,400,000원
11	연수문화원	5,580,000원

12	연극교육연구회	3,220,000원
13	연수구 평생학습활동가	4,210,000원
14	아트뮤직봉사회	4,500,000원
15	한국예술경영협회	2,750,000원
16	벨로체기타앙상블	1,400,000원
17	연수난우회	1,500,000원
18	연수창작예술센터	1,100,000원
19	한음가야금회	1,900,000원
20	시나브로회	2,000,000원
21	연수어울리는공예인	1,900,000원
22	공간을그리다 미술회	2,000,000원
23	성목회	1,900,000원
24	심연회	1,800,000원
25	노뚝돌	5,090,000원
지원금 총계		69,519,390원

☐ 기대효과

- 관내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463	220	105	70	68

- ❖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유공자등 사기양양을 위한 보훈단체 사무실 마련
- ❖ 사회취약계층 및 연수구민의 일자리제공을 위한 일자리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연수동 599-5(탑피온 빌딩)
- 사업기간 : 2010.9 ~ 2011.7
- 사업규모 : 12층(1,894.743㎡), 4층(1,835.601㎡)
- 총사업비 : 2,760백만원

□ 추진사항

- 2010. 9 : 업무용 건물 탑피온 매입 활용계획 수립
- 2010.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상정
- 2010.1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 2011.2.28 : 탑피온 매입계약 체결
- 2011.3.11: 등기완료(12층)
- 2011.7.15: 등기완료(4층)

□ 기대효과

- 탑피온 건물의 매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 사회 취약계층 및 연수구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사회통합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2,760	-	-	2,760	-

- ❖ 사회복지사업의 단순구호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사업기간 : 연중 (2011.1.1 ~ 2011. 12.31)
- 사업대상 : 연수구 저소득 주민 등
- 총사업비 : 122백만원

□ 추진사항

-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
 - 불우이웃지원사업(재해, 화재, 질병, 기타등) : 3세대 3,000천원
 - 연말연시·명절 저소득주민 지원 : 80세대 8,000천원
 -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장려금 지원 : 100명 25,000천원
 -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배터리지원 : 13명 2,212천원
-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사업
 -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 중·고등학생 23명 23,000천원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운영지원 등 60,820천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 가정의 지원을 통한 계층간 양극화 해소기여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617	125	118	122	252

- ❖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서 노인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 ❖ 노인일자리 및 봉사활동의 공공분야 공헌도와 민간분야 수익창출을 높이고, 노인인력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사회복지를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
- 대 상 : 연수구 거주 노인(60~65세 이상)
- 내 용
 -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
- 사 업 비 : 2,370백만원
- 사업수행기관 : 연수구청, 연수구노인복지관,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인력개발센터 ·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규모	공원지킴이 160명	노인인력개발센터 18개 사업 (992명) 노인복지관 10개 사업(401명)
예 산 액	400	1,970

□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활동 증진
- 적극적인 노인복지로 노인문제 해결 및 사회안전망 확보
- 베이비부머 · 고학력 다경험 노인인프라 확보 및 범국가적 활용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7,954	2,106	1,535	1,943	2,370

- ❖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자연생태 환경 기틀 마련
- ❖ 주민에게 도심 속 자연생태공간 제공으로 평온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승기천 (법적 관할 남동구)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규모 : 길이 6.2km, 너비 45~110m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추진사항

- 자연수생식물 식재(물억새 20,000본) 및 관리 : '11. 05월
- 승기천 환경정화행사 실시 : 4회 1164명, 폐기물 11.5톤 수거
- 승기천 하천지킴이 활동 : 11회 546명
- 승기천 하상청소(녹조류, 퇴적물제거) : 365톤 제거
- 승기천 유해식물 제거 : '11. 08월 ~ 10월
- 승기천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11. 04월 ~ 11월
- ※ 청소행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협조

☐ 기대효과

-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로 주민에게 친환경 친수공간 제공
-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생활환경 제공하여 건강한 도시 이미지 구축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785	-	200	250	335

☐ 위치도



☐ 현장사진



- ❖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영양, 식품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업기간 : 2000. 7월 ~ 계속
- 총사업비 : 1,056백만원

☐ 추진사항

- 맛자랑 경연대회 및 그린푸드 실천 포스터 공모전 개최
-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 예치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운용

☐ 기대효과

-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및 다양한 먹을거리 제공 및 연수구를 대표하는 맛있는 집 발굴, 육성
- 국제적 수준의 친절하고 위생적인 시설의 우수 음식점 육성
- 식품의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3,812	846	902	1,008	1,056

- ❖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 ❖ 설해대비 재설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사업규모 : 법정 사용가능액의 30% 범위 내
 - 2011년 집행금액 : 90,941천원
- 총사업비 : 1,566백만원 (2011년말 기준 누계 적립액)

□ 추진사항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 사업내용 : 지리적 여건,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 위험 최소화 및 사전예방
 - 사업기간 : 2009. 2. 5 ~ 2010. 10월
 - 총비용 : 81,255천원
- 제설장비(소형 염화칼슘살포기)조달구매
 - 사업내용 : 폭설대비 소형 염화칼슘살포기 7대를 구입하여 해당동에 비치하여 적시적소에 제설작업을 수행함
 - 사업기간 : 2011. 11월 ~
 - 지출금액 : 80,432천원

□ 기대효과

-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 위험 최소화 및 재해 사전예방
-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설해대비 재해 예방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406	165	52	91	98

- ❖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연수구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고품격 옥외광고문화 정착
- ❖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간판문화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형성

□ 사업개요

- 위 치 : 옥련동194번지 일원 3개 건물, 연수동 582-2번지 연수 임대상가 2개 건물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사업규모 : 82개 업소 238개 간판
- 총사업비 : 201백만원(구비 90%, 민간자부담 10%)

□ 추진사항

1. 1차 간판이 디자인된 이미지 개선사업

- 사업대상지 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 2011. 1 ~ 2월중
- 주민설명회 개최 2011. 2. 월중
- 사업신청동의서 접수 2011. 2. 28
-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2011. 5월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11. 6월
-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2011. 6.1 ~ 7. 31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2011. 6. 7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1. 6. 30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2011.8.1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1.9.21 ~ 11.19

2. 2차 간판이 디자인된 이미지 개선사업

- 사업대상지 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 2011. 1 ~ 2월
- 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11. 2. 10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11. 4. 20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2011. 6. 7
-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2011. 7. 14
-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2011. 7. 4 ~ 8. 19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2011.8.1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1.10.7 ~ 12.29

☐ 기대효과

- 주변과 조화되는 고품격 명품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 간판의 자율관리에 따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 및 확산
- 물주 및 업소주 자율참여로 신속한 추진 및 파급효과 기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	-	-	201	-

☐ 위치도

- 1차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이미지 개선사업



☐ 현장사진

- 1차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이미지 개선사업



☞ 옥련동 194-4 아이에프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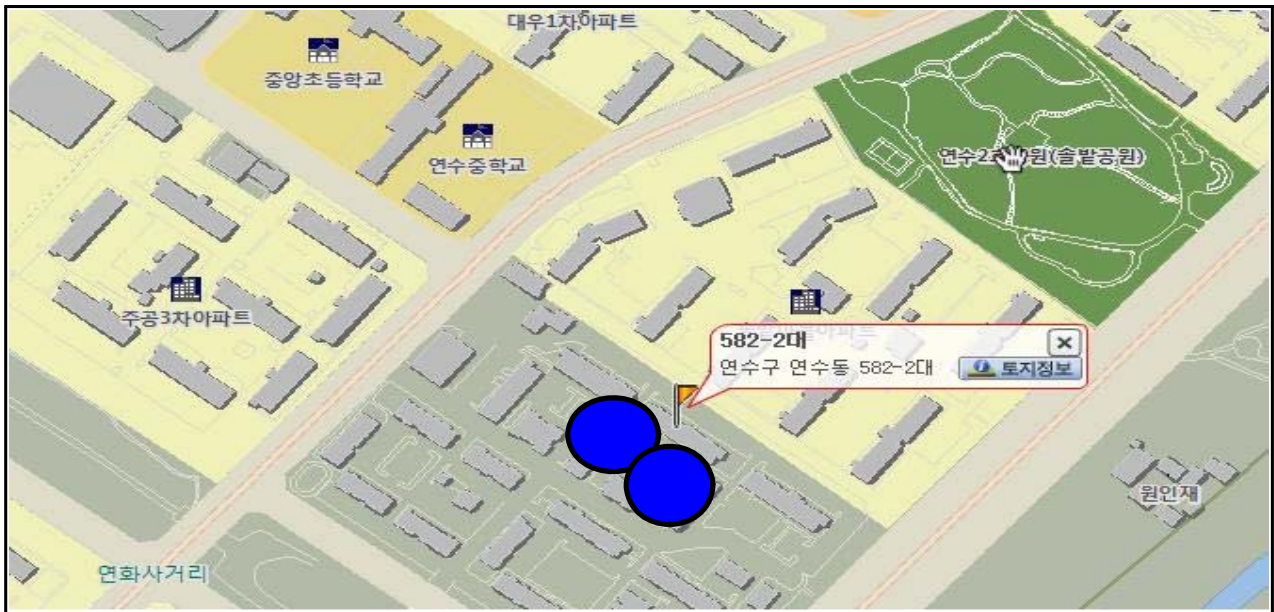
☞ 옥련동 194-5 인영빌딩



☞ 옥련동 194-42 럭키빌딩

□ 위치도

- 2차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이미지 개선사업



□ 현장사진

- 2차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이미지 개선사업



연수동 582-2 401동



연수동 582-2 402동

- ❖ 능허대·송도유원지 등의 주요 경관자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옥련동 588도로 일원
- 사업기간 : 2011.1 ~ 2011.10
- 사업규모
 - 로터리 상부 중앙녹지대 경관조명 설치
 - 송도로터리 및 교통섬 야간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 총사업비 : 352백만원

□ 추진사항

- 사업계획 수립 2011.01.14
-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11.02.08
- 주민설명회(1차) 2011.02.24
- 시 경관위원회 상정 및 자문결과조치 2011.04~2011.05
- 주민설명회(2차) 2011.06.09
-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1.06.15
- 계약심사의뢰 2011.06.22
- 시설공사 착공 2011.08.09
- 시설공사 준공 2011.10.31

□ 기대효과

-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가로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 따듯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밤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	-	-	352	-

☐ 위치도



☐ 현장사진



- ❖ 승기천변 산책로에 초화 식재, 계절군락조성 및 유지관리를 적기 시행하여 기존 하천변과 차별화되는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
- ❖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공하여 연수구민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승기천(승기교 ~ 동막교)
- 사업기간 : 2012.04.22 ~ 2012.11.30
- 사업규모 : 승기천 5.8km 구간
 - 초화류 식재 75,850본, 계절군락(코스모스, 유채) 4,570m² 조성
- 총사업비 : 198백만원

☐ 추진사항

- 초화류 식재 및 계절군락 조성 완료

☐ 기대효과

- 행정구역을 넘어 실 수요자 위주의 적극행정 실행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 계절 초화를 감상할 수 있는 대단위 꽃길조성 및 적기 유지관리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 둘레길의 한 축을 정비하여 환상형 녹지 조성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718		20	500	198

☐ 위치도



☐ 현장사진



- ❖ 도심의 녹지축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 ❖ 바쁜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승기천변 완충녹지 ~ 문학산 ~ 청량산
- 사업기간 : 2010. 8 ~ 2011. 11
- 사업규모 : L = 17.54km
- 총사업비 : 887백만원

☐ 추진사항

- '2010. 8 : 연수둘레길 조성 계획수립
- '2010. 8~ 10 : 연수둘레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 '2011. 2 ~ 6 : 연수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11. 6 ~ 10 : 연수둘레길 조성사업 시행

☐ 기대효과

- 승기천 ~ 청량산 ~ 문학산을 연결하여 여가활동,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어울려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예술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수구의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887		25	862	

This is a detailed aerial map of the Incheon area, showing the city's layout, major roads, and green spaces. The map is color-coded with green for parks and green spaces, blue for water bodies, and yellow for urban areas. Key locations are labeled in Korean, includ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City Hall, Incheon University, and various parks and sports facilities. The map also shows the surrounding regions of Seoul and Gyeonggi-do.

A photograph of a stone-paved path in a park. The path is made of irregular, flat stones set in a sandy or grassy matrix. It is flanked on the left by a low, dense hedge of reddish-brown shrubs. Behind the hedge, several young pine trees are planted, each supported by a wooden stake. To the right of the path, there is another low hedge, followed by a dense line of mature evergreen trees. In the background, a white building with a dark roof is visible through the trees. The sky is overcast and grey.

- ❖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공원시설기능 및 녹지의 현대화 선진화 등으로 재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연수구 연수2동 603번지(동춘교회 부근)
- 사업기간 : 2011.07.15 ~ 011.10.26
- 사업규모 : A=2,456.4m²
 - 조경공사, 건축(화장실)공사, 전기(조경, 건축)공사
- 총사업비 : 695백만원

☐ 추진사항

- 공사준공 완료

☐ 기대효과

- 주민편익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
-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공원시설기능 및 녹지의 현대화 선진화 등으로 재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이후
사업비	695			31	663

☐ 위치도



☐ 현장사진

